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라.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5. 4. 29. ~ 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술직렬”이란”을 ““과학기술직렬”이란”으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1조의7을 삭제한다.

제29조제5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를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의16제1항제3호 후단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

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50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
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
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
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5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나, 단서는 제외한
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

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제50조의3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를 “필기시험을 실시하되,”로, “서류전형의 방법으”를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을 실시하되,”로, “실기시험의 방법으”를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면접시험의 방법으로”를 “면접시험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을 실시하되,”로, “실기시험의 방법으”를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전형의 방법으로”를 “서류전형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면

접시험과”를 “면접시험을 실시하되,”로, “서류전형의 방법으”를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접시험의 방법으로”를 “면접시험을 모두”로 한다.

제55조의3제3항 중 “제46조제1항 본문”을 “제46조제1항”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득점”을 “득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제46조제1항 본문”을 “제46조제1항”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 중 “영어능력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서 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데이터											
	교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 행정사무 관	지방교육 행정주사	지방교육 행정주사 보	지방교육 행정서기	지방교육 행정서기 보
	사회 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 복지사무 관	지방사회 복지주사	지방사회 복지주사 보	지방사회 복지서기	지방사회 복지서기 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기	속기			지방속기 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2. 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과 학기술 서기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	지방농업	지방농업	지방농업	지방농업		

	식물검역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 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지방해양 수산사무 관	지방해양 수산주사	지방해양 수산주사 보	지방해양 수산서기	지방해양 수산서기 보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역									
식품 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 위생사무 관	지방식품 위생주사	지방식품 위생주사 보	지방식품 위생서기	지방식품 위생서기 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 기술사무 관	지방의료 기술주사	지방의료 기술주사 보	지방의료 기술서기	지방의료 기술서기 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 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지방약무 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간호 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사무 관	지방간호 조무주사	지방간호 조무주사 보	지방간호 조무서기	지방간호 조무서기 보

보건 진료	보건진료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과 학기술 서기관	지방보건 진료사무 관	지방보건 진료주사	지방보건 진료주사 보	지방보건 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 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 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방재 안전사무 관	지방방재 안전주사	지방방재 안전주사 보	지방방재 안전서기	지방방재 안전서기 보
방송 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사무 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 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 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위생	위생					지방위생 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	지방조리	지방조리	지방조리	지방조리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시설 관리	시설관리					지방시설 관리사무 관	지방시설 관리주사	지방시설 관리주사 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 보
	운전	운전					지방운전 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목 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 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 보
	건축 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 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 보
		배관운영									
	통신 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 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 보
	전화 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전화 상담운영 주사	지방전화 상담운영 주사보	지방전화 상담운영 서기	지방전화 상담운영 서기보
	전기 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 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 보
	기계 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 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 보
		영사운영									
	열관 리운 영	열관리운 영						지방열관 리운영주 사	지방열관 리운영주 사보	지방열관 리운영서 기	지방열관 리운영서 기보
	화공 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 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 보
	가스 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 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 보
	기후 환경 운영	기후환경 운영						지방기후 환경운영 주사	지방기후 환경운영 주사보	지방기후 환경운영 서기	지방기후 환경운영 서기보
	선박	선박항해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항해 운영	운영						항해운영 주사	항해운영 주사보	항해운영 서기	항해운영 서기보
선박 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선박 기관운영 주사	지방선박 기관운영 주사보	지방선박 기관운영 서기	지방선박 기관운영 서기보
농림 운영	영림운영 원예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 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 보
사육 운영	사육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 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 보
보건 운영	보건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 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 보
사무 운영	워드운영 필기운영 회계처리 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 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 보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	100퍼센트

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나. 올 경력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한정한다)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80퍼센트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5)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11)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퍼센트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2) 및 나목5)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	-----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5급 공무원: 80퍼센트 • 6급 이하 공무원: 100퍼센트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 • 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8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8]

공업·녹지·보건진료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공업	녹지	보건진료
			직류	가스	조경	보건진료
5급 이상	경력 경쟁 임용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조경학, 행정법총론	지역사회보건학, 행정법총론
			필수	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조경계획 및 설계	보건학
	전직 · 승진	제2차	선택		조경사 및 이론, 공원녹지,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	노인보건학, 모·아보건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역학, 예방의학 중 1과목

					목	
	공개 승진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행정 법, 영어	조경학, 행정법, 영 어	보건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화공열역학, 유체역 학, 연소공학	조경사 및 이론, 조 경계획 및 설계, 생 태계관리 및 식물	노인보건학, 지역 사회간호학, 성인 간호학
6 급 및 7 급	공개 경쟁 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 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화공 열역학, 가스안전관 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 경재료 및 시공, 생 태계관리 및 식물	보건학, 지역사회 간호학, 노인보건 학, 응급간호학
			선택	공업화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공정 제어 설계 중 1과목		
	경력 경쟁 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조경학	보건학
			필수	화공열역학, 가스안 전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노인보건학, 지역 사회간호학
		제2차	선택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사 및 이론, 공 원녹지, 경관계획 및 관리, 생태계관 리 및 식물 중 1과 목	
	8 급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 사
		제2차	필수	화학공학일반, 가스	조경학, 조경계획	공중보건, 지역사

및 9 급	경력	제1차	필수	일반, 가스안전관리	및 생태계관리	회간호
	경쟁			화학	조경학	생물
	임용 · 전직 · 승진	제2차	필수	화학공학일반, 가스 안전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 함) 및 시공	공중보건, 지역사 회간호

별표 9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

행정·속기·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계 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속기	세무
			직류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	지방세
5 급 이 상	경력 경쟁 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제2차	선택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공개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경제학,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6 급 및 7 급	공개 경쟁 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행정학	행정학	행정법
		제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개 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경력 경쟁 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사회	사회
		제2차	필수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상업부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0조, 제50조의3, 제54조, 제65조, [별표 8](#),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 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 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 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 표 1의 <u>기술직군</u> 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 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4. ----- ----- ----- ----- -- “과학기술직렬”이란 ---- ---- <u>과학기술직군</u> -----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 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의 범위에서 정한다.</u>	<u><삭 제></u>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 4. (생략)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생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나 시·군·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

-----.

1. ~ 4. (현행과 같음)

5. -----

과학기술직렬 -----

6.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과학기술직렬 -----

-----.

⑤ ~ ⑧ (생략)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청장, 시·도의회의 의장이나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

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나 시·군·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⑦ (생략)

-----.

② -----

----- 과
학기술직렬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⑨ (생략)

1. ~ 4. (생략)

② ~ ⑤ (생략)

⑧ _____

_____ 과

학기 술 직 렬 _____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 이 경우 해
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2. (생략)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③ (생략)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권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

-----.

1. 2. (현행과 같음)

3.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시험과목) ① -----

[illegible]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49조(신체검사) ① -----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②
(생 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 .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생략)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생략)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
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
격자를 결정

④ 삭 제

⑤ ~ ⑪ (생 략)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자 결정 등) ①·② (생 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
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
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단서
신설>

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
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
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
로 합격자를 결정

다. 가목 및 나목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자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같
으나, 단서는 제외한다) -----
----- . 다만, 제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1. ~ 3. (생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

----- 필기시
험을 실시하되, -----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

1. -----

-----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
-----.

2. -----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 ④ (생략)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 면접시험을 -----
-----.

2의2. -----

----- 서류
전형을 실시하되, -- 실기
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
가-----.

3. -----
----- 서류전
형을 -----.

4. -----

----- 면접시험을 실
시하되, --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
-----.

5. -----

----- 면접시험을
모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① -----

----- 득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 ④ (생략)

⑤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 4. (생략)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6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 을 주는 행위 5의2.·6. (생 략) ② ~ ⑥ (생 략)	----- ----- 5의2.·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